

항 소 장

원 고(항 소 인) 윤 수 만
피 고(피항소인) 동두천시장

송달료 72,480원
인 지 142,500원

2010. 6. .

원고(항소인) 윤 수 만

서울고등법원

귀중

항 소 장

사 건 2009구합 3663호 생계급여변경처분취소
원고(항 소 인) 윤 수 만

피고(피항소인) 동두천시장

위 당사자간 위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. 6. 8.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, 원고는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

(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2010. 6. 17. 송달받았습니다.)

원판결의 표시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항 소 취 지

1. 원판결을 취소한다.
 2. 피고가 2009. 8. 14.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감액변경처분을 취소한다.
 3. 소송비용은 제1,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1. 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항소장 부분 1통

2010. 6.

원고(항소인) 윤 수 만

서울고등법원

귀중